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고 병 준 의원)

의안 번호	25-10
----------	-------

발의연월일 : 2025. 2. .

발 의 자 : 고병준, 강동오, 권영숙,
권인순, 백남환, 안미자,
장정희, 최은하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상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상인 육성을 도모하고 기존 상인과 상생 성장하며 지속가능한 운영을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 다. 청년상인 육성 계획의 수립 (안 제5조)
- 라. 청년상인 지원사업 (안 제6조)

3. 관계법령

-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
- 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2
- 다. 「청년기본법」 제4조, 제18조

4. 조 례 안 : 붙임

5.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6. 기타사항

가. 입법예고: 2025. 1. 24. ~ 1. 31.

나. 의견제출: 없음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상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상인”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위치한 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창업하려는 사람 또는 창업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상인 육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상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청년상인 육성 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청년상인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마포구 청년상인 육성 계획(이하 “육성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

② 육성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청년상인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
2. 청년상인 육성 시책 및 범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청년상인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청년상인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육성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상인 전문능력 함양을 위한 경영교육

2. 청년상인 창업 컨설팅 및 마케팅 교육

3. 청년상인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4.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7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4. 9. 20.] [법률 제20455호, 2024. 9. 20., 일부개정]

제16조(청년상인의 육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청년상인의 육성을 위하여 청년상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창업에 따른 임대료 및 점포개선 지원
2. 창업을 위한 교육·컨설팅 지원 및 창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3. 창업 성공사례 발굴·포상 및 홍보
4. 그 밖에 청년상인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여 공고하는 사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4. 9. 10.] [대통령령 제34886호, 2024. 9. 10., 일부개정]

제6조의2(청년상인의 기준) 법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청년상인”이란 39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창업하려는 사람 또는 창업한 사람을 말한다.

청년기본법

[시행 2023. 9. 22.] [법률 제19253호, 2023. 3. 21., 일부개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을 수립·실시하는 경우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 3. 21.>

제18조(청년창업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마포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예산을 수반하는 사항 미규정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관광경제국 경제진흥과 조현욱
연 락 처	02-3153-8582